2026학년도 1학기 기숙사 입사 안내

2026-1학기 기숙사 입사와 관련하여 입사지원서, 건강진단서, 관리비, 식비 제출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입사 대상 및 기간

가. 기숙사 입사 대상 : 2026-1학기 기숙사 입사 희망자

나. 기숙사 입사 기간 : **2026. 3. 01.(일) - 3. 02.(월)**

다. 26-1학기 거주 기간 : **2026. 3. 3.(화) - 06. 22(월)**

라. 입사 시 배정 건물 : 여자(성문관), 남자(성학관)

2. 제출 서류 **※ 제출서류(입사지원서, 건강진단서) 기한 내 미제출 시 기숙사 입사 불가**

가. 입사지원서

- 제출 방법 : 재학생은 금강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기타/기숙사 입사신청서 작성 및 저장[첨부1]
  졸업생은 기숙사 사무실 문의 후 입사지원서를 dorm@ggu.ac.kr로 제출
- 신청 기한 : **2026. 2. 9(월) - 2. 23(월)**

나. 건강진단서 : 신입생 및 복학생 제출 (26년 동계 방학 잔류자는 건강진단서 제출 제외)

- 거주 지역 병원 및 보건소에서 검진(**필수 검사항목 : 흉부 방사선 촬영, B형간염-항원항체**)
- 제출 방법

  (1) 금강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-기숙사 입사신청서 작성 시 PDF 또는 JPG 파일로 첨부[첨부2]

  ※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리거나 삭제 처리하여 제출

  (2) 진단서를 이메일로 제출 (제출 주소: dorm@ggu.ac.kr)
- 제출 기한 : **2026. 2. 9.(월) - 2. 23(월) 까지**

3. 기숙사비 및 식비: 1,587,000원 [기숙사비 : 672,000원(112일*6,000원) + 식비 : 915,000원(183식*5,000원]

가. 납부 기간 : **2026. 2. 9(월) - 2. 23(월)**

※ 기간 내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미 입사로 간주

나. 납부 계좌 : **학생 개인별 가상계좌**는 종합정보시스템 입사지원서에 표기되어 있음

다. **기숙사비 및 식비 합계 금액**을 **본인의 가상계좌 번호에 입금해야 함**

라. 식비 관련

- 식비는 3/3~6/22 기간의 월~목(3식)으로 산출함(금,토.일, 공휴일 및 대체휴일은 산출일에서 제외함)
- 식사는 의무식을 원칙으로 하되, 급식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의무식 제외 대상자의 경우 제외[첨부3]
- 의무식 제외 대상 입사자도 식비 선납 완불 후 평가하여 환불 조치함
  (의무식 제외신청: 학교 홈페이지-일반공지-의무식비 환급신청 공지 게시물 확인)

마. 교내 모든 출입은 학생증으로만 가능하니, 학생증 분실 시 교학팀에 문의

4. 입사를 위한 버스 운행

가. 버스 운행 일자: 2026. 3. 01(일) - 3. 02(월) / 총 2회 운행

나. 버스 운행 노선표

[3.01(일)] 학교(13:00)– 대전역(14:30) – 대전터미널(14:40) – 학교(16:00)
[3.02(월)] 학교(13:00)– 대전역(14:30) – 대전터미널(14:40) – 학교(16:00)

5. 문의: - 기숙사 사무실 041-731-3063~3064

- 식비 : 경영지원팀 041-731-3315
- 학생증 및 임시 출입 카드: 교학팀 041-731-3213

2026. 2.

금강대학교 기숙사

1 입사신청방법

금강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https://gates.ggu.ac.kr/member/login
로그인 후 [학생역량시스템] 클릭 후 통합정보시스템 창에서 [기숙사]-[입사신청] 메뉴를 클릭

** 종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: 041-731-335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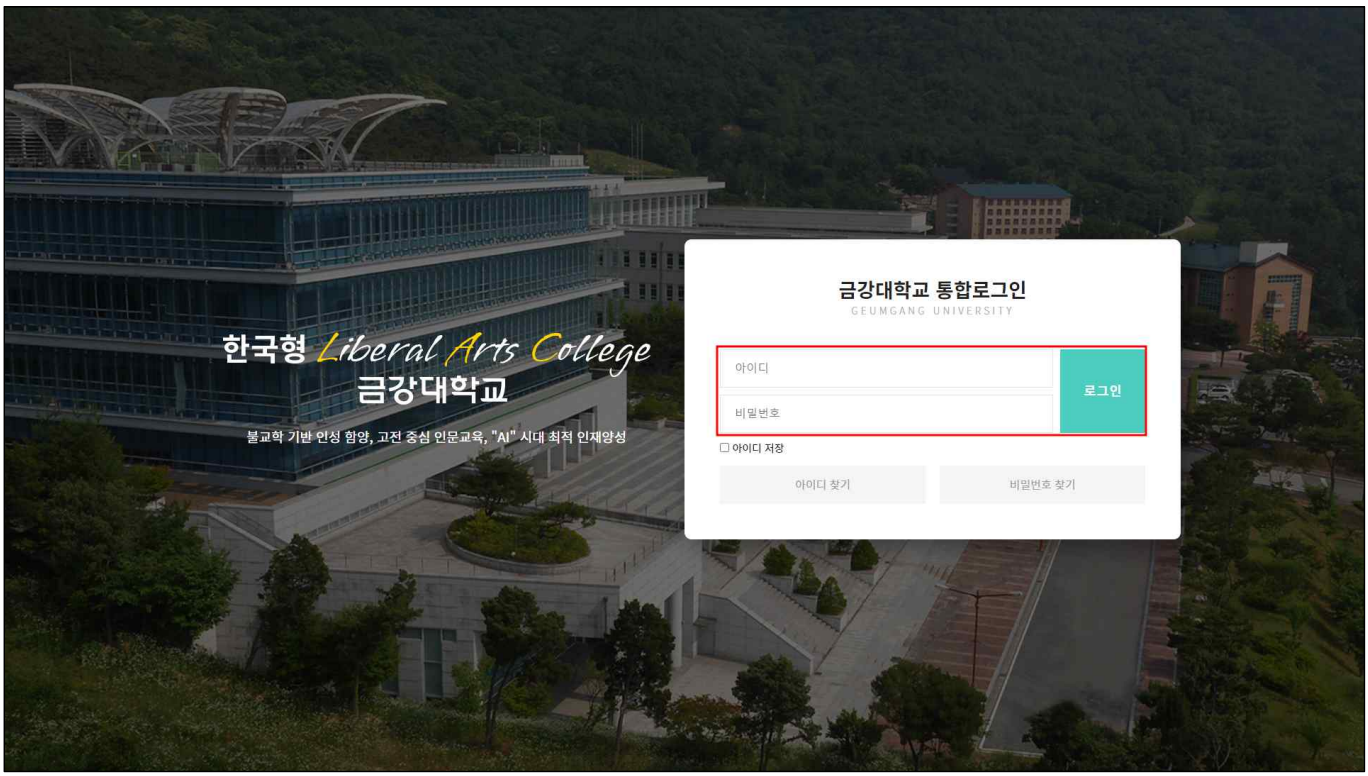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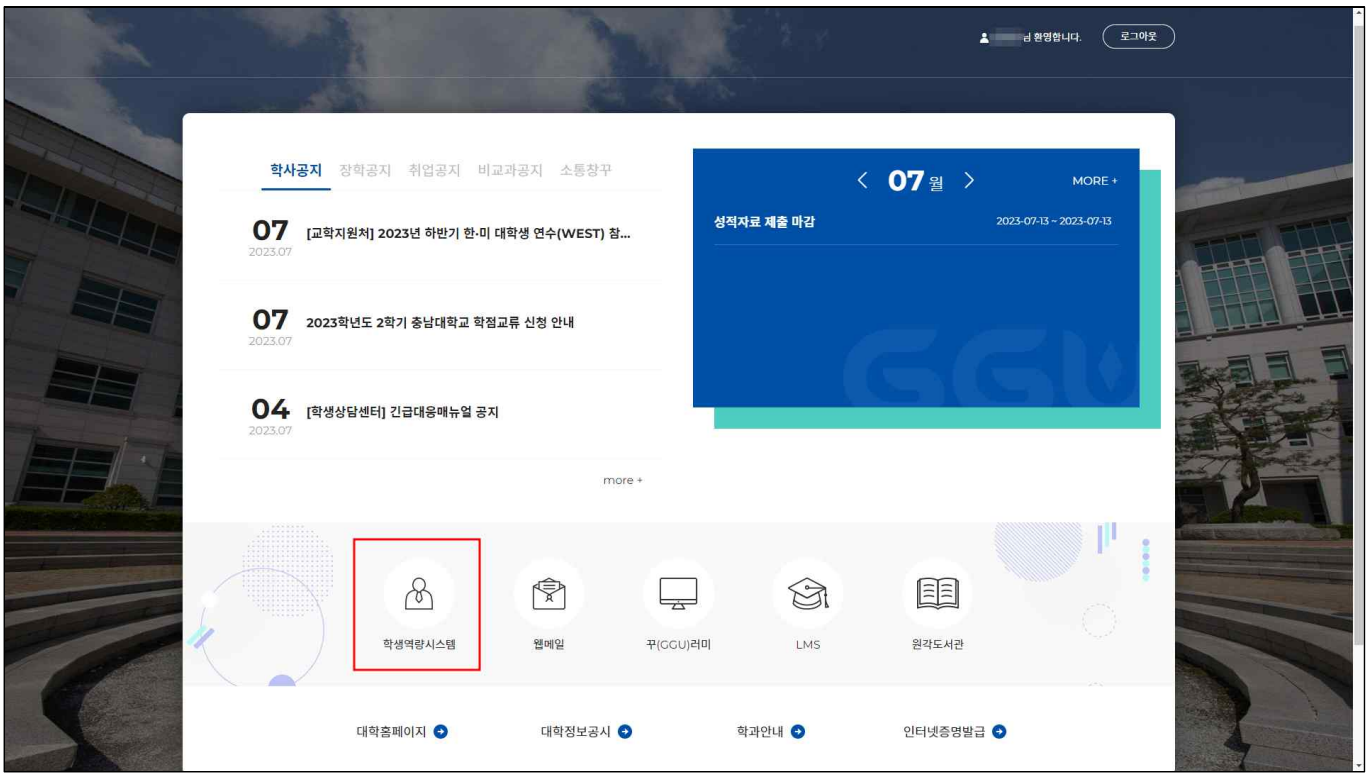

2 기타 안내사항

- 본인의 가상계좌번호 확인 가능(입금 가능 기간: 2.10~2.18)
- 입사지원서 내 건강진단서 파일 업로드 가능
- 호실 유형 및 거주 기간을 선택 시 기숙사비가 자동 설정
- 필수입력정보(›) 입력 후 [입사신청]을 클릭 후 고지서를 출력 가능

3 의무식 제외 대상 기준

2024학년도 제 3차 급식평가위원회 결과 공지 참고 [공지확인하기]

〈금강대학교 학생 식비 환급 기준〉

시행: 2024. 11. 05

제 1항(식비 환급 기준) 식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한다.

1. 퇴사(휴학, 퇴학, 자퇴 및 강제퇴사)하는 경우 - 퇴사생의 경우, 일할 계산하여 퇴사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식수 전액을 환불한다.
2. 병역법 등에 의한 징병검사, 소집, 훈련 - 일할 계산하여, 해당 일수만큼 환불한다.
3. 중도취업 및 그 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일 경우, 환급 신청 기준일로부터 잔여일수만큼 전액을 환불한다.

제 2항(의무식 제외대상)

1. 의무식 제외대상은 의무식비 환급신청 기한 내에 관련부서에 신청한 심의대상자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납부금액 환급을 진행한다. (단, 의무식 카드를 이용해 식사한 경우 해당 부분은 매식 금액으로 계산한 뒤 차액 환급 진행)
2. 4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중 3과목 이하의 수강하는 경우에는 의무식 대상에서 제외한다.
3. 졸업 필수요건인 봉사활동 1과목과 K-MOOC은 과목 수에서 제외한다.
4.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를 기준으로 의무식 대상에서 제외한다.

   ※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식 환급 신청을 요할 경우, 종합병원(3급 이상)에서 발급받은 확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급식평가위원회를 거쳐 심의.

   (개인병원 '소견서'는 제출 불가 / 장염, 위염 등의 일시적인 질병은 심의 불가)
5. 의무식비 환급신청 기한은 매 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 기간 내 홈페이지 일반공지에 공지한다. 기타 사유로 개강 연기 시, 개강 후 2주 이내 환급신청 진행(공휴일 제외)한다.

제 3항(식비 환급 비율)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(2항 제외)의 식비 환급 비율에 대하여는 잔여식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 (단, 개강일로부터 3분의 2 지점이 지났을 경우에는 식비 환급이 불가하며, 제 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)

제 4항(급식평가위원회)

1. 급식운영방법 결정, 의무식비 환급, 식단 적절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고하기 위하여 급식평가위원회를 구성, 운영한다.
2. 급식평가위원회 소집 및 심의 사항은 위원회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.